

### 금융당국 “선적된 화물은 한진해운 책임” 입장 고수

금융당국이 조양호 한진 회장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사제 출연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진해운에 선적된 화물은 한진해운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지난 6일 조양호 회장은 사제 400억원을 출연, 한진해운에 임금을 완료했으며 최은영 전 회장은 12일 사제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 역시 600억원의 자금을 조건부로 지원하기로 결의한 상황이다.

한진해운이 기업 회생 절차(8월 31일)를 신청한 이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너(Owner)가 있는 기업은 그 오너가 책임있는 모습을 다해야 한다”며 기업 책임론을 강조해왔다.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

서 열린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회의’에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련 국책은행 담당 임원진은 ‘한진해운이 일단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역시 압류금지신청(스테이오더·Stay Order)이 발효된 주요 거점 항만으로 선박을 이동하고 선적 화물을 하역한 후 최종 목적지까지로 수송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일본·미국·영국·싱가포르(임시)로부터 한진해운은 스테이오더 허가를 받았으며, 독일·스페인·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에 스테이오더 신청 중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의 협력 기업과 화주 피해 등이 예고되는 만큼, 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양수산부, 은행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화주 정보를 파악하고, 화주 피해 등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한진해운 협력 업체 처리를 위한 전담 직인 배치를 검토하고, 최우선 심사 대상'으로 취급해 피

해를 줄이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입장이다.

현재까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는 한진해운 관련 화주의 하역 지연에 따른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한 문의와 수출입 운임 상승·대금회수 애로 등의 건의사항이 접수된 상황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협력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 차원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밀착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 시 추가 자금 지원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삼일회계법인 조사위원이 회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10월 28일 조사보고서가 나오며, 11월 25일 회생계획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 나라 곳간 ‘나홀로’ 호조세... 나라 빛은 처음 600조 돌파

월간 재정동향 9월호, 1~7월 국세 수입 20조1000억 증가  
7월말 국가채무, 600조3000억원...전월비 8조6000억 ↑



정부가 세금을 걷어 들이는 속도에 고삐를 죄면서 나라 곳간은 ‘나홀로’ 호조세다.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 나라 빛은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1~7월 국세 수입은 15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6조2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2분기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5조9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 계획보다 세금이 걷힌 속도들의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66.8%로 전년보다 4.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7월말 국가채무를 보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가 600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6000억원

이 증가했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이 각각 7조6000억원, 1조3000억원 늘었다.

통상 국고채 발행이 매달 이뤄지는데 반해 국고채 상환은 3·6·9·12월만 이뤄지는 등 상황이 없는 달에 국가채무가 늘어난 경향으로 보고 있다.

재정수지는 1~7월 누계 총수입과 총지출이 각각 249조원, 241조원으로 기록됐다. 통합재정수지는 8조1000억원 흑자다.

관리재정수지의 경우는 15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장정진 기재부 재정건전성관리과장은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며 재정수지 적자폭이 6월말(관리재정수지 -28조5000억원) 대비 개선됐으나 9월 이후에는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에 따른 지출증가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세수는 브렉시트·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적 불요인에도 불구하고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어 추경 상 국세수입(232조7000억원)은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체봉 기자

### 금감원 “가족에게 대신 빚 갚으라고 하는 것은 불법”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추심행위 녹취, 사진 등 자료와 함께 신고 당부

경남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취업 준비중에 생활자금이 필요해 길거리에서 일수대출 명함을 보고 돈을 빌리면서 가족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A씨가 이자를 주기로 한 날 연락이 안 되자 사채업자는 어머니 등 가족에게 연락해 대출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감원 혹은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가족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추심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등록대부업자는 주로 대포폰으로 채무자와 가족에게 전화해 “당신 딸이 빚쟁이로 살아가도록 놔둘 거냐”,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폭설, 협박을 일삼았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사실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해 불법 사채업자들이 범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추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증거자료와 함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현재 기자



### 공정위 조사방해·거부한 대형유통업체, 최대 2억 처벌가능

대형유통업체 과태료 부과기준, 국무회의 통과  
조사방해·자료미제출 등 범위반유형 과태료 부과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공정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최대 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신고사실 통지절차 도입, 분쟁조정 개시절차 구체화 등을 담았다.

우선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공정위 조사에 대한 방해·거부·기피,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불응, 조사공무원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서면실체

조사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유형 등에 대해 법인과 개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서 등 법률상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 미보존과 공정위의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는 1차·2차·3차 이상 위반 등 횡수를 고려해 최대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고사실 통지절차도 도입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신고 접수 후 15일 안에 신고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과 신고내용을 대형유통업체에 통지하면 된다.

아울러 분쟁조정협의회의는 분

쟁당사자의 조정신청이나 공정위의 조정의뢰를 접수한 시 조정번호, 조정개시일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분쟁당사자와 분쟁내용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액·부과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게 돼 과태료 부과업무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개정법시행으로 유통 분야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조정당사자의 법적 지위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진 기자

**우리는행 WooriBank**

“위비”라고 불러주세요  
위비(WiBee)는 모바일 전용 은행  
위비뱅크의 새로운 파트너입니다  
WiBee Bank ©2015 WOORIBANK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이 모바일이~ 정말 쉽고 빠른 모바일 은행이 필요해!”

**쉽다!  
빠르다!  
간편하다!**

국내최초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뱅크**  
by 우리카은행

**위비모바일등장**  
전통적인 서비스와 차별화된 모바일 전용 서비스로  
다들 물어봐도 모르던 서비스도 가능

**위비모바일대출**  
신속·신뢰·편의성... 모바일 전용 대출 서비스로  
다들 물어봐도 모르던 서비스도 가능

**위비모바일페이**  
편의성 향상... 모바일 전용 결제 서비스로  
다들 물어봐도 모르던 서비스도 가능

※ 대출 심사금 전제 시 잔액에 따라, 신용회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비뱅크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 위비뱅크 대출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통예금에서 보충하여 보충하는 분 은행에 있는 계좌의 위비뱅크대출금으로 상환시 수수료, 이자율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 위비뱅크 대출은 내역이 공백인 은행에서 발급되며, \*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 모바일뱅크 앱의 FAQ를 참조하십시오. \* 2015.08.22 은행업자법(제1000호) 제11조(제1항) 제2호(2)에 따라 위비뱅크는 은행입니다.